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91
----------	------

제출연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 늘봄학교 사업추진을 위한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 정원 증원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154명 (7,722명 → 7,876명)

- 교육전문직원
: 증 154명 (588명 → 742명)

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특정직 정원 조정: 증 154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증 154명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2024. 10. 5. ~ 2024. 10. 8.): 의견 없음

- 단축사유: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41조1항 단서

나.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다. 협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첨부자료

-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별첨 1】

- 2)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2】
- 3) 비용추계서: 【별첨 3】
-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4】
- 5)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통보 확인서 【별첨 5】
- 6)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별첨 6】
- 7) 관계법규: 【별첨 7】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첨 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722”을 “7,876”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88”을
“742”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876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25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4		33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7,040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74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691				

【별첨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7,722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2. (생략)</p> <p>3. 교육전문직원 정원 <u>588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 <u>7,876명</u>-----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742명</u></p>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계	7,722					총계	7,876				
정무직 계	1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25					일반직 계	7,125				
2·3급	1		1			2·3급	1		1		
3급	9		9			3급	9		9		
3·4급	3		3			3·4급	3		3		
4급	44		33	11		4급	44		33	11	
4·5급	7		7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7,040					5급 이하 소계	7,040				
전문경력관 소계	7					전문경력관 소계	7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 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 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연구사 소계	14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588					특정직 계	74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51		29	2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537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691				

【별첨 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로 지방공무원 154명* 증원, 이에 따라 인건비 상승

* 임기제 교육연구사(늘봄지원실장) 154명(초등 149명, 특수 5명)

2. 비용추계의 전제

특정직 154명 증원에 따른 1인당 인건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소요 인건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구분	-						
	소계(a)						
세입	인건비	18,526,046	19,081,827	19,654,282	20,243,910	20,851,227	98,357,292
	소계(b)	18,526,046	19,081,827	19,654,282	20,243,910	20,851,227	98,357,292
□ 총 비용(a-b)		18,526,046	19,081,827	19,654,282	20,243,910	20,851,227	98,357,292

※ 재원: 보통교부금

※ 비용추계 단가: 2025년 총액인건비 전문직 단가(120,299천원)

※ 비용추계 방법(154명 기준 5개년도 추계)

- 1차년도: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단가

- 2차년도~5차년도: 전년도 인건비 x 처우개선율 3% 적용(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 향후 단가 및 처우개선율에 따라 소요비용 변동 가능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18,526,046	19,081,827	19,654,282	20,243,910	20,851,227	98,357,292
	지방세수입						
시비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합계		18,526,046	19,081,827	19,654,282	20,243,910	20,851,227	98,357,292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장학사	황은영
입안주관부서	행정관리담당관	통보일	2024. 10. 8.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조치사항
안 별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동 개정(안)은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에 따른 특정직 공무원 정원 조정에 대한 별표 3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함- 따라서, 동 개정(안)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정원 관련 규정 정비가 목적이므로 부패 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안동의”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4A서울교육026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명	전은산	전화번호	02-2282-8644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여인진	전화번호	02-399-9546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4년 10월 07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4년 10월 07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0월 07일

【별첨 6】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전은산 (02-2282-8644)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마한열(위원장), 김상일, 이민철, 이정현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2조 제3조 별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안은 늘봄학교 사업추진을 위한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 증원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됨. - 본 개정안은 특정직 정원 154명 증원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원안에 동의하나 전체 초등학교 수 대비 증원 규모가 현저히 부족하여 한 명의 늘봄지원실장이 여러 학교를 맡는 상황이 우려됨. -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또는 순환 배치 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안정적인 성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늘봄지원실장의 배치 기준 및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함. - 아울러, 조례안 개정 이후 늘봄학교 운영 인력(늘봄지원실장 등) 및 관련 예산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함. 					원안 동의 (개선권고)

【별첨 7】 관계법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일부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8.>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

4.6.11., 2016.12.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 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 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 3.5.8., 2013.12.4., 2018.2.27.>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 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 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5. 8.>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 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